

금융투자소득세의 원천징수제도

원천징수 시기

구분	내용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시기
원칙	금융회사는 상반기 (1월1일 ~ 6월30일) 또는 하반기 (7월1일 ~ 12월31일) 중, 고객에게 지급된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원천징수 상당액의 인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7월10일까지, 하반기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해 1월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 해지 시	고객의 계좌가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는 각 반기 시작일(1월1일 또는 7월1일)부터 계좌해지일까지 금융회사 등을 통해 지급된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원천징수 시 특이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공제 1그룹과 2그룹 별로만 손익 통산하여 원천징수 이월결손금 공제 未적용 ※개인 확정신고 시 1·2그룹간 손익통산 및 이월결손금 적용
----------------	--

1단계 금융투자소득 합산	금융투자소득의 그룹별 분류 및 그룹 내 합산	아래와 같이 기본공제 그룹별로 실지명의별 보유계좌 내 소득금액을 합산합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상장주식 등 소득 (5,000만원 공제 1그룹) 기타 금융투자소득 (250만원 공제 2그룹) ※확정신고와 달리 원천징수 시에는 그룹간 손익통산 없음 [소령 §203의2①(2)]
---------------------	--------------------------------	---

<p>2단계</p> <p>그룹별 기본공제 적용</p>	<p>기본공제</p>	<p>실지명의별, 기본공제 그룹별로 합산한 소득금액에 각각의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p>		
	<p>적용방법</p>	<p>기본공제 그룹별로 하나 또는 복수의 금융회사 등에 기본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p> <p>(예: A사에 2천 만원, B사에 3천 만원 공제 신청 가능하나, 그 해 동안은 기본공제가 적용된 금융회사등을 다른 금융회사등으로 변경이 불가능하고 관리가 번거로워 복수의 금융회사에 기본공제액을 분할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음)</p>		
	<p>적용신청</p>	<p>1. 금융회사등별로 최초 신청 시 원천징수기간 종료일까지, 2. 최초 신청 후에는 변경하려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에 금융회사등에 신청</p> <p>※신청 이후에는 금융회사등에 감액변경 불가하나, 공제한도 미달증액추가신청은 가능</p>		
	<p>개인별 기본공제 한도관리제도</p>	<p>관리 주체</p>	<p>한국금융투자협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자료 집중기관)</p>	
		<p>통지 의무</p>	<p>금융회사 등은 기본공제자료 집중기관에 기본공제 신청 사항을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p>	
		<p>자료 요청</p>	<p>국세청장은 기본공제 신청 자료의 조회·열람·제출요구 가능합니다.</p>	
<p>확인 방법</p>		<p>금융회사 등은 기본공제자료 집중기관에 금융회사 등에 신청된 기본공제금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p>		
<p>3단계</p> <p>세액계산</p>	<p>세액계산</p>	<p>기본공제 그룹별로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금액을 차감하여 그룹별 과세표준 및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룹간 손익통산 없음)</p>		
	<p>원천징수세율</p>	<p>20%(지방소득세 별도)</p>		

원천징수세액의 정산

내용	기본공제 그룹별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실제로 원천징수 된 총 세액이 연간 원천징수 되었어야 할 총 세액보다 과다한 경우, 그 초과납부세액을 정산하여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1그룹에서 상반기에는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으나, 하반기에는 1그룹에서 금융투자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정산 환급

원천징수세액 및 확정세액 비교 사례

(단위 : 만원)

구분	금융투자소득금액 (그룹별 합산)		기본공제 (소득금액 한도)		과세표준		원천징수세액	
	1그룹	2그룹	1그룹	2그룹	1그룹	2그룹	1그룹	2그룹
Case 1	6,000	2,000	5,000	250	1,000	1,750	200	350
Case 2	6,000	100	5,000	100	1,000	0	200	0
Case 3	△2,000	500	-	250	0	250	0	50
Case 4	8,000	△2,000	5,000	0	3,000	0	600	0

구분	금융투자소득금액 (그룹별 합산)		금투자소득금액 (그룹간 손익 통산)		기본공제 (소득금액 한도)		과세표준	확정세액
	1그룹	2그룹	1그룹	2그룹	1그룹	2그룹		
Case 1	6,000	2,000	6,000	2,000	1,000	1,750	200	350
Case 2	6,000	100	6,000	100	1,000	0	200	0
Case 3	△2,000	500	0	△1,500	0	0	0	0
Case 4	8,000	△2,000	6,000	0	5,000	0	1000	200

금융회사가 상속,증여 등의 원인으로 금융투자소득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구분	내용
<p>원천징수 제외 통지</p>	<p>금융회사 등이 상속,증여 등의 원인으로 금융투자소득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금융회사 등은 계좌보유자에게 <u>해당 동일 종목의 소득이 원천징수에서 제외된다</u>는 것을 통지해야 합니다.</p> <p>이 경우 한 계좌 내 동일 종목의 금융투자상품 중 일부의 금융투자소득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종목의 금융투자소득 전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령 §203의2⑤]</p>
<p>금융투자소득 계산할 수 없는 사례</p>	<p>①상속 및 증여,대차, 또는 금융회사등이 금융투자상품등의 매매·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지 않는 양도를 원인으로 금융투자상품등이 금융회사등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고되거나 계좌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p> <p>②예탁결제원에 예탁하지 않은 주식등이 금융회사등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고된 경우</p> <p>③주식등이 2025년 1월 1일 전에 출자, 증자, 감자, 주식배당 등으로 주주 또는 출자자의 지분비율, 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p> <p>④위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 금융회사등이 해당 금융투자상품등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소칙 §94의3 ③)*</p>
<p>원천징수 제외명세서</p>	<p>금융회사 등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 제출 시 원천징수대상 소득 중 <원천징수 하지 않은 소득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기 종료월의 익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p>
<p>원천징수 요청서</p>	<p>취득가액 불분명 금융투자자산에 대해 금융회사의 원천징수를 원하는 고객은, 그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u>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 전까지</u> 해당 금융회사에 <원천징수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p>
<p>효과</p>	<p>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금융회사가 원천징수를 할 수 없는 위와 같은 경우, <u>고객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을 예정·확정신고 및 납부</u>하여야 합니다.</p>

* ①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금융투자상품등이 다른 금융회사등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고된 경우

② 조특법 시행령 §14의4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식등 (금투세 가이드라인상 유사사례)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득(비과세)이 있는 경우

1. 고객의 제출의무

조세특례에 의해 금융투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고객은 금융회사 등에 “원천징수 배제신청서” 를 작성하여 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가 속한 달의 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법 §148의2⑤ 및 소령 §203의4]

2. 금융회사의 제출의무

금융회사 등은 “원천징수 배제신청서”를 받은 경우 해당 금융투자소득을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하고, 지급명세서 제출 시 “원천징수 배제신청서”와 원천징수대상 소득 중 “원천징수 하지 않은 소득 명세서” 를 함께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법 §148의2⑥ 및 소령 §203의4]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원천징수와 관련된 금융회사의 기타업무

1. 금융회사의 원천징수의무

<p>반기별 원천징수의무</p>	<p>금융회사는 각 회사가 관리하는 모든 계좌에 대하여 계좌보유자별 금융투자소득금액을 합산하여 반기별로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소법 §129①(9)]</p>
<p>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의무</p>	<p>금융회사는 계좌보유자에게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소법 §148의2, 소령 §203의2]</p>
<p>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예외</p>	<p>원천징수의무자가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투자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금융투자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p>
<p>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p>	<p>투자자가 금융회사 한 곳만을 이용해 거래하고 기본공제 그룹간 손익 통산이 불필요한 경우, 금융투자소득금액 3억원 이하까지는 해당 금융회사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p>

2. 금융회사의 고객 계좌관리

금융투자 소득금액의 누적관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금융회사는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에 각 계좌보유자별로 금융투자소득금액을 누적 관리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 인출의 제한	금융회사는 기본공제를 신청한 고객의 금융거래계좌를 관리하면서, 누적 손익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거래부터는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의 인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소법 §148의2③]

3. 금융투자소득 자료 제출 및 보관 의무

자료	제출기한	보관기간
금융투자상품 거래명세서	반기 다음다음달 10일 (2/10,8/10)	과세기간 말일로부터 5년
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주식 등 거래명세서		
주권비상장법인대주주의 주식 등 거래명세서		
금융투자상품보유명세서	2/10	
금융투자소득 지급명세서	반기 다음달 말일 (1/31, 7/31)	원칙적으로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국기법 §85의3]
소득계산불능 또는 원천징수배제 신청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명세서		
원천징수배제신청서		

※국세청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과 거래소, 다자간매매체결회사("금융투자업관계기관등")에게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투자업관계기관등은 요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당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세청장은 요청한 자료의 제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소법 §174의2②]